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지침

제 정 2017.09.11 개 정 2020.02.28

개 정 2022.03.30

개 정 2022.08.01

개 정 2023.12.06

[감찰부 042-600-828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및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부패행위" 란「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2. 공사의 예산사용, 공사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3. 1호와 2호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③ "공익침해행위 등"이란 상기 제1항, 제2항의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를 말한다.
- ④ "공익신고" 란 공익침해행위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1.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 경우
- 2.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 를 한 경우

- ⑤ "공익신고자" 란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 ⑥ "협조자" 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개 정 2020.02.28.>
- (7) "불이익조치" 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개 정 2020.02.28.>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번호 사용 정지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의 정신 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勘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제3조(공사의 책무) ① 공사는 공익침해행위 등의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 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 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사는 각종 계약 등에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해서 는 아니 된다.
- 제4조(임직원의 청렴 및 신고의무) ①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 등 및 다른 임직원이 공익침해행위 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공익침해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사, 공사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공익침해행위 등'을 인지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해태를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
 - ④ 임직원은 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의 진술·증언 등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익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 2.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3.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1.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 2.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설치한다.
- 제7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공사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임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신고의 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한 비밀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 제8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공사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9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9조의2(비실명대리신고)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 등으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 등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신설 2022.08.01.>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 등은 공익신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08.01.>
- ③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안심변호인 위촉 등)은 감사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08.01.>
- 제10조(신고서식 등) ①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 제11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 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 제12조(대표자 선정 등) ① 동일한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표 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형제자매
 -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3. 변호사
 -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 제13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 제14조(보완의 요구)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 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2. 공익침해행위 등을 하는 자
 - 3. 공익침해행위 등의 내용
 -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5. 공익침해행위 등의 증거 등
 -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③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제15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 ②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 제16조(공익신고기록) ①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 ②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 ④ 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 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 제17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공사는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 정 2020.02.28.>
 - ③ 공사는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2.03.30.>
 -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 2. 조사·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
 -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 청을 하여야 한다.
 - ⑥ 국민권익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 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

- 야 한다.<개정 2023.12.06>
- ⑦ 공사는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 ⑧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공사는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8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접수된 신고가 공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신고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 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 제19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18조 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공익신고한 경우
 -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 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공익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7. 공익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8.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7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9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수 있다
 - ②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06>
 - ③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 제21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사 임직원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 1. 공익신고자 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 2.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 ② 공사 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부패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고의적으로 누설한 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사장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장은 소속직원이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감사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제23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사장은 공익신고 등을 한 소속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사장은 공익신고 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소속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24조(신변보호 안내) 사장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25조(징계의 감면) ① 사장은 공익신고자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공익신고자가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제26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사장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리한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 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7조(공익신고자 보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 ② 이 지침에 의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장계 등) ① 감사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1.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 2.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 3.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 한 자
 - 4.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 5. 사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 ② 공사는 신변 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9조(보상금 지급) ① 공사는 내부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 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자에게 [별표1]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3.30.>
 -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담당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5. 감사업무 또는 공직윤리업무 담당 직원이 신고한 경우
 - 6. 기타 보상심의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의 결정은 공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 부서장이 신고자 명의의 지정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신고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제1항 각호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29조의2(보상금 등의 중복지급 금지)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신 설 2020.02.28.>
- 제29조의3(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공사는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12.06>
 -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해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4. 과태료,과징금,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03.30.>
 -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 정 2020.02.28.>
- 제30조(부패행위 신고 보상심의위원회) 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로 하고, 위원은 감사가 지명하는 부서장급 3인, 감사실장, 감사실 각 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직원을 간사로 둔다.
 - ② 보상심의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 의결 기준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③ 회의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 제31조(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사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 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3.12.06>
 -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개정 2022.03.30.>
-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신설 2022.03.30.>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1. 공사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개정 2023.12.06>
- 2. 공사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개정 2023.12.06>
- ③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12.06>
- 제31조의2(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사는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 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 정 2020.02.28.>
 - 1. 육체적·신체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비된 이사비용
 -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개정 2022.03.30.>
 -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제32조(다른지침과의 관계)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다른 규정의 적용이 공익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02.28.>
-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사는 공익신고 접수 후 법 제6조의 해당 기관 중 하나에 이첩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 ① 이 지침은 2017. 09. 11.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사규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내부신고자 보호 및 보상처리 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2020. 02.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2022. 03.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2022. 08 0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2023. 12 06. 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신 고 내 용	보 상 기 준
	○ 수수금액 100만원 미만
	: 수수금액의 100%
	○ 수수금액 100~500만원 미만
	: 100만원+100만원 초과금액의 80%
○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	○ 수수금액 500~1,000만원 미만
	: 42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60%
	○ 수수금액 1,000~2,000만원 미만
	: 720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40%
	○ 수수금액 2,000만원 이상
	: 1,120만원+2,000만원 초과금액의 20%
○ 청탁, 알선행위 신고	○ 200만원 이내
○ 고의적으로 공사재정에 손실을 입힌 행위	○ 환수대상금액의 30% 이내
○ 기타 부조리신고	○ 100만원 이내

- ※ 1. 보상금의 최고한도는 2,000만원으로 한다.
 - 2.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행위의 경우 조사·확인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향응 수수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 4.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5. 당해연도 예산배정 사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시기는 차기 년도로 이월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이름		주민등록	번호		
신고자	주소					
	연락처		직업			
	이름		주민등록	번호		
피신고자	주소					
	연락처		직업			
신고 취지 및 이유						
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한국가스기술공사 사 장 귀하

공 익 신 고 접 수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송부기관	조사결과 접수일	보상금 안내일자	담당자	비고
			송부일자	결과통보일	안내일사		•
201x - 00							

접 수 증

접수번호 20 (부패 / 공익) 신고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 고 제 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한국가스기술공사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20 (부패 / 공익) 신고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 고 제 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한국가스기술공사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성명			주민	<u>l</u> 등록번호				
신고자	주소								
	연락처								
코이시크	제목								
공익신고	접수일	자			접수번호	<u>.</u>			
신분공개 동의여부	이 과정 ⇒ [2. 수사기 귀하의 거칠 수	- · 귀하의 에서 구] 동 관의 수 신고사 있습니	공익신고건에 대하여 조 비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원 의 [] 부동의 아사과정 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기	남시하는 남시하는	는 것에 동의하 하이 동의하 할에 송치되0	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남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한국가스기술공사 사 장 귀하

대표신고자 선정서 주민등록번호

대표신고자 주소 연락처

제목 공익신고

접수일자

성명

접수번호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선정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작성방법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접수	
20	0 -	공익 저	1	호	

접수자	센터장

공 익 신 고 기 록

신고제	목												
담당부	서								담 당				
신고자 :	성명							피신	<u> </u> 고자성	명			
	조	사종료위	일	20	년	월	일		내	용			
	0	이 송 일		20 년		월	일		이송기	이송기관			
처 리	결기	과통보임	20 년		크 월 일			대성 (대상					
													1
신분공개	국민권'	익위원:	회	조사기관		수시	사기곤	관			담당		센터장
동의여부													
종 결 일		20							종결	확인			
보존기간		년 (2	.0	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 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공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 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개정 2023.12.06>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공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개정 2023.12.06>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 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 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및 피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 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 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개정 2023.12.06>
- 나.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개정 2023.12.06>
-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2.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10조 제5항)

공익신고 조사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	일자		처리일자	
신고제목						
처리결과						
결과통보일						
	성 명			주단	민등록번호	
신고자	주 소					
	연락처					
이의신청 이 유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① 누진기판	소관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소 속			
시티네이시	직업(직위)			
	[] 내부 공익신고자		[] 외부 공익신고자	
	[] 포상금 지급대상	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	l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④ 공익신고	신고내용			
조사결과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성	등에 의한 보상금 및	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없음)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수령여부	[] 있음 (금액: [] 없음)
「공익신고자 보	L호법」 제26조의2제1	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금	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	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2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에 ✔를 표시합니다.
-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